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2022년 5월 25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24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5. 24.(화)	담당부서	자원안보정책과
담당과장	김호성 과장(044-203-5140)	담 당 자	이동진 주무관(044-203-5252)

2022년 『에너지바우처』,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!

- 12월 30일까지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**'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**의 **신청·접수**를 **5월 25일(수)**부터 **12월 30일(금)**까지 전국 **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** 및 **복지로 온라인**에서 **시작**한다고 밝혔다.

○ **에너지바우처 사업**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·하절기 냉·난방을 위한 전기, 도시가스, 액화 석유 가스(LPG)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.

□ '22년 에너지바우처 **지원대상은** 약 88만 세대로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**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** 중, **노인, 장애인, 영유아, 임산부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성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**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되며,

○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.

구 분		1인 세대		2인 세대		3인 세대		4인이상 세대	
총계 (원)	여름	103,500	7,000	146,500	10,000	184,500	15,000	209,500	15,000
	겨울		96,500		136,500		169,500		194,500

□ **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,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**할 수 있으며, **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**과 **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**으로 이용 가능하다.

○ **국민행복카드**는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연탄, 액화 석유 가스(LPG)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(판매소)에서 사용이 가능하며,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하여야 한다.

○ **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**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, 아파트 거주자,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, 에너지바우처 **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**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.

○ 또한,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**여름 바우처**로 **최대 4만5천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**할 계획이며, **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**된다.

□ 보다 자세한 내용은 **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에너지바우처 콜센터**(☎1600-3190) 및 **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**(www.energyv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* 위와 관련하여 금년('22년)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방안이 '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'22년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,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이동진 주무관(☎ 044-203-525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

□ **(개 요)**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액화 석유 가스(LPG)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□ **(지원대상)** 「**소득기준**」과 「**세대원특성기준**」을 **모두 충족**하는 세대

○ **소득기준**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**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**

○ **세대원특성기준 :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**이 다음 **어느 하나에 해당**

- 노인 (주민등록기준 1957.12.31 이전 출생자)
- 영유아 (주민등록기준 2016. 1. 1 이후 출생자)
- 장애인 (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)
- 임산부 (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)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(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희귀질환[별표4], 중증난치질환[별표4의2]을 가진 사람)
- 한부모가족 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)
- 소년소녀가정 (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

□ **(지원금액)**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

구 분	1인 세대	2인 세대	3인 세대	4인 이상 세대	내 용
여 름	7,000원	10,000원	15,000원	15,000원	· 요금차감(전기)
겨 울	96,500원	136,500원	169,500원	194,500원	· 요금차감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) · 국민행복카드(등유, 액화 석유 가스(LPG)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)
총 금액	103,500원	146,500원	184,500원	209,500원	·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

* 여름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

**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(최대 45천원,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)

□ **(지원절차)** 신청·접수(읍·면·동) → 선정·결정통지(시·군·구) → 바우처 생성·발급(카드사, 에너지공급사 등) → 사용·정산·모니터링(전담기관, 지자체 등)

* 요금차감은 신청 시,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(납부자번호) 필요
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,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·발급

□ **(신청기간)** '22. 5.25. ~ 12.30. * 세대원 수 변경 : '22. 5.25. ~ 6.28.

□ **(사용기간)** '22. 7. 1. ~ 9.30.(여름바우처), '22.10.12. ~ '23. 4.30.(겨울바우처)

□ **(전담기관)** 한국에너지공단

붙임 2 **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**

